

1. 제정이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8239호, 2021. 6. 8. 공포) 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이의 적절한 시행(2022. 6. 9.)을 위하여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개대상 정보) 동 법에 따라 공개되는 ‘원자력안전정보’로서, 법률에 규정되지 않고 법 제2조제1항제1호 라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그 밖에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 등에 관한 정보’를 규정*(시행령안 제2조)

* 원자력이용시설의 건설·운영 과정에서의 원자력안전관리 정보,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실태조사,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정보 등

나.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정보공유센터로 지정될 수 있는 대상기관을 규정하고,* 지정 기준 및 절차, 매년 업무보고 의무,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을 명시(시행령안 제3조, 시행규칙안 제2조)

* 1. 공공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4. 대학, 5. 주변지역 관할 지자체가 원자력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여 운영하는 기관 또는 단체 6. 그 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다. (비공개 세부 기준)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별로 분류하는 방식으로 ‘비공개 대상 원자력안전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온라인 공개 및 매년 점검 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시행령안 제4조)

- 해당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하여 공개하되, 제외 사유 명시
- 부분 공개 사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정하여 세부 기준에 명시

라. (연구기관등에 정보 제공)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수집·연계·가공·분석한 원자력안전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연구기관등의 범위와 정보 제공 요청 절차, 정보 제공 여부의 결정 및 통지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시행령안 제5조, 시행규칙안 제3조)

마. (지역주민에 정보 제공)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이 지역주민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원자력안전정보의 종류*와 방법 등 규정(시행령안 제6조)

- * 1. 원자력이용시설 안전관리 검사결과, 2. 원자력이용시설 사고·고장 발생 현황 및 조치사항, 3. 방사성폐기물 반입 및 저장 현황 4. 방사능방재훈련, 5. 그 밖의 필요한 원자력안전정보

바. (장해방어조치 공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10조에 따라 원자력 사업자로부터 원자력이용시설의 장해방어조치에 관한 보고를 받은 경우 해당 시설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원자력 안전협의회’에 신속히 통보하여야 하며, 관련 내용*을 정보통신망에 공개(시행령안 제7조)

- * 1. 상황이 발생한 사업자 명칭·주소, 2. 상황 발생 일시 및 장소와 원인, 3. 방사선 장해상황, 4. 사업자의 안전조치 내용 및 계획, 5.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조치결과

사. (원자력안전협의회) 법 제13조제4항에서 위임한 원자력안전협회의
구성 및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시행령안 제9조, 제10조)

-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20명 내외 구성하며 임기는 2년, 연임은 1회만 가능(원자력 관련 전문가는 예외)
- 협의회는 원자력안전 관련 현안, 원자력 사건·사고, 방사성폐기물 관련 안전현안, 원자력안전 관련 지역주민의 제기 현안, 기타 원자력안전과 관련하여 주민에게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보교환 및 협의

3. 검토사항 : 해당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향후계획 : 관계기관 의견조치 및 입법예고(∼'22.3월초), 규제심사(∼4월),
법제처 심사(∼5월), 차관·국무회의 상정 및 대통령재가
(시행령, 5월), 총리재가(시행규칙, 5월), 공포·시행(6월)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지정신청서 등) ①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른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의 지정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로 지정받은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정보공유센터 변경사항 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정받은 기관의 기관명, 주소, 대표자의 성명
2. 지정 시설의 소재지
3. 운영계획서의 내용 중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의 변동

제3조(연구기관등의 정보제공 요청에 관한 서식) ①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안전정보를 수집·연계·가공·분석한 해당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청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요청서에는 연구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60일
------	------	------	-----

신청기관	기관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팩스번호	
	주소		
	담당자 명	담당자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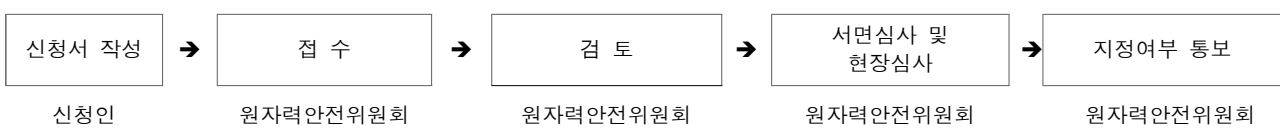
대표

(서명 또는 인)

원자력안전위원회 귀하

첨부 서류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2. 운영계획서
-------	--------------------------------

처 리 절 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앞쪽)

제 호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지정서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

대표자 : (생년월일:)

위 기관을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원 자 력 안 전 위 원 회

직인

210mm×297mm[백상지 150g/㎡]

(뒤쪽)

번호	년 월 일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확인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변경사항 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신고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명		
	담당부서	담당자	
변경 사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기관명		
	주소		
	대표자 성명		
	지정 시설의 소재지		
	운영계획서의 내용 중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		

변경사유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정보공유센터 변경사항에 대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원자력안전위원회 귀하

첨부서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신고인	→ 접수 원자력안전위원회	→ 서류검토 원자력안전위원회	→ 지정서 재발급 원자력안전위원회	→ 지정서 수령 신고인

정보제공 요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대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요청기관	연구기관 등(법인·단체) 명칭	연구기관 등 (법인·단체) 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위임시 대리인 성명)
	전자우편주소	담당자 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
요청 내용	(별지 사용 가능)	
요청 방법	[] 열람·시청 [] 사본·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인화물 [] 기타()	
수령 방법	[] 직접 방문 [] 우편 [] 팩스 전송 [] 정보통신망 [] 전자우편 등()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요청기관명 () 대표자 () (인) 년 월 일

원 자 력 안 전 위 원 회 귀하

접 수 증	
접수번호	요청인 성명
접수부서	접수자 성명 (인)

귀하의 요청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원 자 력 안 전 위 원 회

직 인

유 의 사 항

- 정보제공이 요청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청구사실이 제3자에게 통지됩니다.
- 정보제공이 요청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요청인은 정보공개시스템 및 타 시스템 연계를 통해 통지된 문서를 대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인날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